

해외경쟁정책동향

본 협회 조사부

미국

연방법무부, 외국 기업에 대해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로 과징금 부과

연방법무부는 일본 기업인 Nippon Electrode Company Ltd.(NDK)와 독일 기업인 VAW Carbon GmbH(VAW)가 탄소 극연봉의 국제적 가격 카르텔에 참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44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의 도쿄 외곽에 위치한 NDK와 독일의 Grevenbroich에 위치한 VAW는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서 탄소 극연봉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회피하기 위해 1996년 2월초부터 1997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다른 제3공모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각각 인정되었다. NDK는 45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고 VAW는 99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탄소 극연봉은 뛰어난 절연 특성과 강도 및 화학 반응과 열에 대한 우수한

저항력 때문에,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최상의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여러 제련소와 주조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독점금지국 형사집행 프로그램 책임자인 James M. Griffin 법무 보좌관은 “이것은 미국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 독점금지법의 침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사안을 해결한 또 하나의 사례이다”고 말했다.

NDK와 VAW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격담합 공모를 시행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 미국과 그 밖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탄소 극연봉의 가격을 협의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회합을 가지고 토론에 참가하였으며,
- 이러한 회합과 토론에 참가하여 미국과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탄소 극연봉을 일정한 수준에서 가격을 공동 책정하거나 상승·유지키로 합의하였다.
- 이러한 합의내용을 이행하고 강제 하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판매가격과 고객정보를 상호 교환하였다.

2001년 3월 상기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를 시인하고 유죄가 인정되었던 최

초의 기업은 이전에는 Hepworth Refractories Inc.라는 명칭을 가졌던 Ohio의 Anchor Industrial Products Inc. 회사이다. 2001년 4월에 Anchor사는 60만 달러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NDK와 VAW는 참가기업들에게 최고 10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는 서면법 제1조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최고 과징금액은 형사범죄 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 혹은 그 형사범죄의 희생자들이 잊은 손실액 중 어느 하나가 법문상의 최고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 혹은 손실액의 2배까지 증가 될 수 있다.

오늘 발표된 이와 같은 판결의 결과는 필라델피아 연방독점금지국 지국과 연방범죄수사국의 협조에 의한 공동 조사에 의한 것이다.

2002. 4. 1. 연방법무부

NAPA시 의사단체, 연방거래위원회 회와 독점금지소송에 대해 합의

캘리포니아 Napa시에 있는 2개의 중요 진료센터에서 의료 진료권을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

사(obstetrician and gynecologist; OB/GYN)로 구성된 의사집단과 그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거래하는 자들과 거래하는 요금 혹은 다른 거래조건을 공동 책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동으로 책정된 조건 이외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이에 대한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기소 내용에 합의하기로 동의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 집단을 해체하고 장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반경쟁적 행위에 참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소장에 따르면 Obstetrics & Gynecology Medical Corp. of Napa Valley(OGMC)와 그 밖의 영리법인, 그리고 독립적인 특수 개업 단체의 행위들이 Napa시의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 혹은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책정하였다는 것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행위들이 외과 의사들의 서비스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건강보험과 고용자, 개인 소비자들을 포함한 소비자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OGMC의 행위들은 연방거래위원회법 위반으로서, 소비자들이 의료 진료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고 연방거래위원회 경쟁국 상임위원 Joseph Simons는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행위들을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공모행위들이 발생하는 반경쟁적 결과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의 기소내용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소장에 의하면 1990년대 OGMC의 외과 의사들은 Napa시의 Napa Valley Physicians(NVP)와 특수 전공분야의 개별 전문의들의 연합체인 IPA의 회원들이었다. IPA를 통해 외과 의사들은 그들이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을 수 있었다. IPAs에 참가하는 외과 의사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비용이 서비스의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재정적 손실의 위험을 다른 참가자들과 분담하고 있다. NVP는 그와 같은 위험분담 IPA의 일종으로서 그것은 역시 의료서비스 품질의 확보와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1998년 초에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소장에서 NVP의 산부인과 및 부인과 의사들이 NVP로부터 받는 상환의 수준과 시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2000년 2월 NVP로부터 사퇴하고 OGMC를 결성하여 무엇보다도 NVP에 대한 그들의 교섭력을 증가시킴으로서 그들의 집단적인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려고 하였다. OGMC가 결성되고 2001년 전까지 산부인과 및 부인과 의사들은 계속적으로 NVP 혹은 어느 다른 건강보험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역시 자신들이 부과할 요금액에 대해 합의하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NVP에 대해 보이콧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로 NVP는 충분한 산부인과 및 부인과 의사들을 확보하지 못하여 건강관리보험 조직계약

에 따라 그들의 가입자들에게 제공하여 야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NVP는 2001년 초에 종료되었고 Napa시에서 몇몇 건강보험사업들은 중단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OGMC는 그 구성원들이 진행한 집단적 요금합의를 정당화할 어떠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및 부인과 의사들은 협의를 받고 있는 반경쟁적 행위의 결과들을 상쇄할 효율성을 창출하기 위해 그들의 치료 과정 혹은 재정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제안된 동의판결 내용

법원에 제출된 동의명령은 부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합법적인 공동 협정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는 반면, 현재 사안에서 제시된 불법적인 행동들의 재발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동의명령문상의 핵심적인 조항들에 따라, 부인과/산부인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거나 참가하는 행위 또는 조장하는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

- 1) 외과 의사들을 대리하여 다른 거래당사자 혹은 제공자들과 교섭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
- 2) 다른 거래당사자 혹은 서비스 제공자와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절하기 위한 합의
- 3) 외과 의사들이 거래하는 혹은 기꺼이 거래할 어떤 조건에 관한 합의 그 외에 동의명령은 부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위에서 언급된 금지된 행위들에 참가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밖에 그 명령에 구속받는 자에게 그와 같은 위반행위에 참가하

도록 장려하고 제안하며, 권고, 강압, 유인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동의판결안은 부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으로 건강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상환액과 계약의 다른 조건을 정하는 행위들을 포함하여, 적절한 위험분담을 위한 공동협정이나 혹은 임상적으로 적합한 통합공동협정을 완수시키기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제안된 동의판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전자의 계약조건들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모든 의사들은 그 협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여야 한다.
- 2) 상환의 기간 혹은 요금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반드시 공동협정을 통해 중요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로 한 것이어야 한다.

임상적으로 적합하게 결합된 공동협정안에서 외과 의사들은 반드시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하지 않고서도 임상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그 공동행위에 참가하는 외과 의사들은 그들의 임상학적 의료행위 방식들을 수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호 독립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상환요금과 조건들에 대한 합의는 공동협정을 통해 중요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동의명령서안은 120일 안에 OGMC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고, 동의명령서와 특정한 개인 사

업자들에 대한 기소내용의 배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동의명령은 2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위원회는 제출된 동의명령서를 수용하기로 표결하였고, 표결결과는 위원 Sheila Anthony가 불참한 가운데 4-0을 나타냈다. 동의명령서의 개요는 연방기록청에서 간략히 공포될 것이다. 동 명령은 위원회가 그것에 대한 최종 표결을 마친 후 2002년 5월 6일 까지 공공의 권리와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될 것이다. 공공의 권리와 의견은 펜실베니아 연방거래위원회로 보내 질 것이다.

2002. 4. 5. 연방거래위원회

뒤에 변색되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기소장에서 Jones 회사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손세탁 할 수 있는 케쉬미르 스웨터를 비롯한 몇몇 의류들을 “dry clean only”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취급표시규정은 소비자들의 소중한 재산이 어떻게 옷감을 세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때문에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Jones 회사와의 합의안은 이 회사가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그들의 의복을 취급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할 것이다”라고 위원회의 소비자보호국 국장 J. Howard Beales는 밝히고 있다.

1971년 12월에 발표된 연방거래위원회의 취급표시규정은 의복류의 수입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이를 상품들에 대해 취급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표시에는 그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 어떠한 적절한 취급이 필요한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또한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들이 판매전에 경고표시를 포함하는 취급지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Jones 회사는 그 기업이 몇몇 의류 품목들이 어떻게 드라이크리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정 케쉬미르 스웨터들이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되어야 하고 물세탁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 연방거래위원회, 취급표시의무 위반 혐의로 Jones Apparel Group 에 과징금 부과

연방거래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 판매회사들 중 하나인 Jones Apparel Group, Inc.(Jones) 회사와 이 회사에 대해 제기중인 소송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연방거래위원회의 취급표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기소장에 따르면 Jones 회사는 잘못된 취급방법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된 취급방법에 의하는 경우 옷감을 손상하게 하는 취급표시를 부착한 옷들을 판매하였다. 플럭킹으로 디자인되어 부풀려진 몇몇 옷들은 그 옷들이 드라이크리닝 된 뒤에 그 플럭킹이 사라졌고, 다른 옷들은 드라이크리닝 된

E U

30만 달러의 과징금은 연방거래위원회가 취급표시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의류 제조업자들에게 부과한 액수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이다. 이와 유사한 30만 달러의 과징금은 1999년 봄에 Tommy Hilfiger U.S.A. Inc.에게 부과되었다. 당시 이 기업은 옷감의 색깔이 바래고 변색되는 사항에 대한 취급표시를 생략한 혐의를 받았다. 그 기업은 30만 달러의 과징금을 지불하는 이외에 장래에 연방거래위원회의 취급표시규정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의 의류 표시에 사용될 내용을 서면 절차로 제출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 기업에 대한 기소를 합의하기 위한 동의명령은 연방거래위원회를 대신하는 연방독점금지국에 의해 오늘 법원에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그 동의명령안을 수용할 지에 대한 표결에서 5-0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2002. 4. 2. 연방거래위원회

독일연방카르텔청 루프트한자(Lufthansa)의 경쟁자 Germania항공에 대한 방해행위 금지 조치

연방카르텔청은 Deutsche Lufthansa 주식회사(DLH)의 가격전략에 대하여 새로운 경쟁자인 Germania항공유한회사(Germania)를 배제하려고 시도한 것이 경쟁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DLH에 대하여 Frankfurt-Berlin/Tegel간의 노선에 있어 1인당 편도가격(승객요금을 포함)을 한도내에서 최저 35유로인 Germania의 항공가격을 상회하지 않는 가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연방카르텔청 Böge장관은 「Germania항공이 공격적인 가격정책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배제되게 된다면 Berlin-Frankfurt간의 항공노선에서 경쟁이 정지되는 것만이 아니다. 이 DLH의 남용적 행위는 이에 더하여 다른 잠재적인 경쟁자나 현재 DLH가 지배적지위에 있는 다른 노선에 있어 종대한 위협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독일 국내의 항공운송에 있어 새로운 경쟁의 발생이 장기간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므로 계속적으로 저지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기간의 법률 논쟁을 가져오게 될 DLH의 발표에 대하여 Böge장관은 연방카르텔청은 종대한 공공의 이익의 관점으로 보나 신규참입자인 Germania를 통한 경쟁의 개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남용금지

결정의 즉시집행을 명하였고, 「회복 불가능한 저해를 경쟁에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결정은 이미 DLH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소송 중에서도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Germania는 2001년 11월 12일에 Berlin-Tegel과 Frankfurt-Main간을 연결한 항공노선에 참여, 이 노선에서 변경·예약 취소가 가능한 편도요금을 99유로로 제공하였다. 이 조건은 본질적으로 DLH의 비즈니스용 여객들에 대한 이코노미 요금에 상당하는 것이다. DLH는 이에 대해 동일한 변경가능성을 갖는 이코노미 요금을 총액 200유로(왕복은 별도로 예약 가능한 것으로 제요금을 포함하여 평균 100유로)로 도입함으로써 대항하였다. 이것은 종래 배타적으로 제공되었던 변경 가능한 이코노미 요금에 비하여 이전까지의 485유로로부터 200유로로(각각 제요금이 포함된) 거의 60% 할인에 상당하는 것이다. 2002년 1월 1부터 DLH는 105.11유로(Berlin-Frankfurt) 및 105.31유로(Frankfurt-Berlin)의 새로운 요금을 도입함으로써 요금을 인상하였다.

이 가격에는 Germania는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LH는 이 운임에 의해 Germania의 99유로의 가격을 사실상 밀도는 효과를 갖는다. 기내식 및 음료와 함께 루프트한자의 고객은 다수회 탑승객 프로그램인 miles & more에 가입할 수 있다. 더욱이 DLH는 Germania의 3배수의 비행빈도를 가지는데 이것은 특히 비즈니스용 여행자에 대해 Germania에는 없는 DLH를 이용하게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타 DLH의 유리한 점으로는 여행회사와의 접속과 예약시스템인 아마데우스(Amadeus)로의 대규모 참가, 스타 에어라인(Star Alliance)으로의 DLH의 가맹, 오랜 기간에 걸친 비즈니스 이용객에게 인기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방카르텔청은 대략적으로 계산하여도 가격의 우위성은 편도 35 유로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LH가 청구하고 있는 가격은 동사의 평균적인 1인당 비용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전략은 Germania를 다시 이 노선으로부터 배제하고 이전의 요금으로 회복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Munich-London/Stansed간, Munich-Frankfurt간 노선에 있어서 최근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2개의 사례에 있어 DLH는 경쟁자인 Go-Fly 또는 Deutsche BA가 이 노선으로부터 철퇴한 후 대폭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였다.

DLH에 의한 새로운 저가격요금의 도입은 Germania의 경쟁공세에 대한 명백한 대응행위이다. 이는 Berlin-Frankfurt노선에 한정해서 대응한 것으로 다른 노선에서는 DLH는 이러한 저액의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DLH의 가격은 Germania의 가격보다 35유로 이상 차이가 날 필요가 있으며 시간적으로 한정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정은 Germania가 2년내에 충분한 지명도를 얻고 고객구속 프로그램을 확립, 경영의 측적 기타 경쟁요소를 완전하게 취득할 수 있고 현재의 조치상황에 있어 이러한 경쟁 배제로부터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

게 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2002. 2. 19. 연방카르텔청 발표

유럽위원회, 카르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leniency(감면)정책을 채택

유럽위원회는 금일 가격카르텔과 기타 경성카르텔의 적발 및 억지를 위하여 중요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위원회는 독점금지규칙의 가장 중대한 위반에 관하여 기업들이 내부고발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leniency 정책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위원회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탐지하지 못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카르텔에 관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기업에게 제재금의 전액면제를 허용한다. 이 leniency 정책은 1996년의 고시를 update한 것이다. 「카르텔의 탐지 및 적발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이다. 1996년의 leniency 정책은 지난 5년간 비밀 카르텔을 적발, 처벌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심지어 기업이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경제의 걱정거리를 내부고발 시키는 더 큰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마리오 몬테 경쟁담당위원은 말했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카르텔은 항상 높은 가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경쟁법 위반이다. 가격카르텔, 시장분할, 생산수량의 할당 또는 입찰담합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러한 행위는 유럽 산업계 및 소비자에게 폐해를 준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원자료의 가격을 인상, 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저하

및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설립조약 제81조에서 명확하게 금지되고 있다.

카르텔의 탐지, 금지 및 벌칙의 부과는 경쟁정책분야에 있어 위원회의 가장 높은 우선사항의 하나이다. 경성카르텔에 대처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운 문제는 비밀의 외투(가면)를 간파하고 공모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더욱 더 교묘해지는 기업의 수법에 대항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경험에 따라 1996년에 이러한 카르텔의 탐지 및 적발에 협력한 기업에 대한 제재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규정한 고시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2001년에 10건의 카르텔에 대한 결정의 채택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 56개 기업에 대해 총계 18억 3천 6만 유로의 제재금이 부과되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의 어느 해와 비교하여도 기록적인 수자이며 이 이전의 모든 연도 즉, EC의 설립으로부터 2000년까지에 부과된 제재금의 합계보다도 큰 것이다.

위원회는 작년, 1996년의 결정에 따라 leniency고시의 적용으로부터 얻은 경험을 검증하였다. 15개국의 EU회원국의 경쟁당국, 경제계 및 법조계와의 자문을 거쳐 기업이 진출하는데 있어 더욱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 투명성 및 법적 안정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정의 주요내용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재금의 전액면제를 허용한다

- 위원회가 위반의 의심이 있는 기업의 건물에 검사(inspection)를 실시하기에 족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원회에 미탐지의 카르텔을 알리는 당해 카르텔의 가장 최초의 구성원
- 위원회가 이미 검사를 개시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 만 당해 정보가 위반을 입증하는데 충분치 않은 경우에, 위반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 당해 카르텔의 최초의 구성원. 이 유형은 당해 카르텔의 어떠한 구성원도 제 1의 유형에 따라 면제의 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제재금의 면제는 카르텔 심사의 2개의 중요한 단계에서 위원회에 중요한 내부정보·증거를 제공한 기업에게 주게 준다. 즉, 사전에 탐지되지 못한 카르텔의 폭로 또는 카르텔 참가자들의 성공적 소추에 이를 수 있는 미지의 중요 증거의 제공 중 어느 하나이다.

기업이 전액면제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하여 위원회에 충분하고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보유하는 모든 증거를 제공하고 위반을 곧바로 종료시키며 다른 기업을 강요하여 당해 카르텔에 참여시키는 수단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책은 1996년 leniency고 시가 기업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선동자 또는 카르텔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맡은 기업을 전액면제로부터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고시와 대조를 이룬다. 이를테면 결정적인 정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선동자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2001년 말까지 5년간 3건에 대하여 제재금의 전액면제를 허용하였다: Rhone-Poulenc(관여한 3건의 비타민 카르텔 중 2건에 관하여), Interbrew의 자회사(Luxembourg brewers 카르텔), 남아프리카 기업 Sappi(carbonless paper 카르텔에 있어 귀중한 정보 및 협력을 제공하였다)

-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면제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은 위원회로부터 고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면제가 허용되는 것을 확인하는 letter를 즉시 받게 된다.
- 신고시는 또한 1996년 고시와 유사하게 면제 자격을 얻지 못하나 위원회가 이미 보유한 증거에 「현저한 부가가치」를 주는 증거를 제공하여 당해 카르텔 관여를 종료시킨 기업에 대한 제재금의 감액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최초의 기업은 부과된 제재금의 30~50%, 2번째 제공자는 20%~30%, 이 이후의 제공자는 2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감액폭의 범위내에서 어떠한 감액의 최종액도 증거가 제공된 타이밍 및 증거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위원회의 심사기간중에 기업이 제공한 협력의 정도도 또한 고려된다. 제재금 감액을 받은 자는 또한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은 감액폭이 제시된 letter를 받는다. 이 letter는 늦어도 이의고지서가 송부된 날까지는 송부된다.

새로운 정책은 기업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신고시의 시행 및 발표

신고시는 2002년 2월 14일에 시행되며, 동 카르텔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다른 기업이 이미 위원회에 협력하고 있지 않은 한 당해 카르텔에 있어 leniency를 신청하는 기업에게 적용된다.

신고시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에 approach할 것을 바라는 기업은 직접 또는 법률자문 등의 중개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 2. 13. 유럽위원회 발표

EU위원회 마리오 몬티 위원, 이동전화요금 규제

EU위원회 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이동전화요금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유선에서 걸려온 통화를 이동전화업체들이 중계하면서 받는 접속료를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접속료 수입이 이동전화업체 전체 수입의 15~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리오 몬티는 2003년 6월부터 EU의 이동전화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몬티 계획안이 발효되는 경우 D1(T-Mobile)이나 D2(Vodafone)와 같이 독자적인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유럽 업체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어 EU의 규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독일 규제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각각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경쟁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이동전화업체들도 국내의 규제당국들이 몬티의 계획안에 제동을 걸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소비자단체들은 몬티의 계획안을 환영하고 있다. EU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이동전화업체들을 직접 규제할 경우 이동전화요금 수준은 전반적으로 인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2. 3. 8. 독일 Handelsblatt

카르텔방지 특별위원회는 구체적 사건에서 카르텔 규제절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카르텔의 발견 및 조사에 있어서 관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게 된다. 국내외의 경쟁당국과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카르텔방지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해당 자연인 또는 기업의 카르텔합의에 대한 처분권도 가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카르텔의 발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카르텔규정 위반행위를 중단했을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연방카르텔청장의 말에 따르면, 카르텔방지 특별위원회의 설립으로 연방카르텔청은 사업자들에게 카르텔은 비신사적 행위라는 것을 일깨워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 그는 “사업자가 종업원을 통하여 금지된 합의를 하기 를 원치 않는다면, 사업자는 자신의 임원이나 종업원들에 대하여 카르텔법상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위법한 카르텔합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2. 3. 5.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카르텔방지 특별위원회 신설

연방카르텔청은 곧 카르텔방지 특별위원회 (Sonderkommission Kartellbekämpfung)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특별위원회는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심결부에서 카르텔합의를 밝혀내야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카르텔청장인 Ulf Böge는 “소비자와 경쟁자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손해가 큰 카르텔을 방지하는 일은 카르텔청의 중요한 임무이다. 우리는 이 위원회가 카르텔합의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데 기여하고 카르텔 규제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용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2002년 1월말에 연방카르텔청은 10개의 전력망사업자와 Wesertal 전력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전력공급사업자들에 대하여 과도한 망 이용료를 부과했다는 혐의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 조사는 주로 250 볼트 이하의 저전압 및 중전압 분야 사업자에게 집중됐었다. 연방카르텔청장 Ulf Böge는 조사절차 진행 중에 Wesertal 전력회사측에서 망 이용료를 20%까지 내리겠다고 하면서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이로써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과도한 망 이용료의 부과 행위는 제거되었다. 카르텔청의 조사 결과 저전압 분야에서의 일반소비자(가정이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료는 독일내 다른 사업자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절차는 연방카르텔청 고위직들의 신고에 의해 개시된다. 그런데 망 사업자들이 조사에 필요한 요금산정의 기초자료들을 제출하기를 거부하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네 차례나 있었다. 연방카르텔청장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들을 통하여 법률에 따른 카르텔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위남용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수법이 등장함으로써, 신규진입이 억제되어 이를 통해 발생되는 경쟁의 자극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2002. 3. 28.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은 Fortum Energie 유한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전력사업을 하고 있는 Wesertal 유한회사에 대하여 과도한 망 이용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따라 Wesertal은 2002년 5월 1일까지 망